

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8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10

제 출 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이유

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"공무소에 읍·면·동·출장소도 해당"된다는 대법원의 유권 해석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읍·면·동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(별표1)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"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"에 관한 사항 신설
-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⇒ 수수료 600원

3. 근거법령

민법 부칙 제3조제4항

제3조 (공중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)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 는 확정일자로 한다.

- 붙 임 1.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2. 친구조문대비표
3. 기타 참고자료

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1)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요금표 구분란의 2. 인가, 허가, 신청, 등록, 지정확인등의
가. 일반행정관계에 7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 준	수 수 료(원)	비 고
7)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	1 건	6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조문대비표

현			행			개			정			안		
구	분	기준	수수료(원)	비고	구	분	기준	수수료(원)	비고	구	분	기준	수수료(원)	비고
1. 중명 (생략)					1. 중명 (현행과 같음)									
2. 인가, 허가, 신청, 등록, 지정확인등 가. 일반행정관계 1) - 6) (생략) (신설)					2. 인가, 허가, 신청, 등록, 지정확인등 가. 일반행정관계 1) - 6) (현행과 같음) 7)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<u>청구</u> (이하 현행과 같음)			1건	600원					

● 民 法

附 則

第 1 條 (舊法의 定義) 附則에서 舊法이라 함은 本法에 依하여 廢止되는 法令 또는 法令中의 條項을 말한다.

第 2 條 (本法의 溯及效) 本法은 特別한 規定 있는 境遇外에는 本法施行日前의 事項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이미 舊法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.

第 3 條 (公證力 있는 文書와 工作成) ① 公證人 또는 法院書記의 確定日字印 있는 私文書는 그 作成日字에 對한 公證力이 있다.

② 日字 確定의 請求를 받은 公證人 또는 法院書記는 確定日字簿에 請求者의 住所, 姓名 및 文書名目을 記載하고 그 文書에 記簿番號를 記入한 後 日字印을 찍고 帳簿와 文書에 契印을 하여야 한다.

③ 日字 確定을 公證人에게 請求하는 者는 法務部令이 法院書記에게 請求하는 者는 大法院規則이 각각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을 納付하여야 한다. <改正 70·6·18>

④ 公正證書에 記入한 日字 또는 公務所에서 私文書에 이르 事項을 證明하고 記入한 日字는 確定日字로 한다.

第 4 條 (舊法에 依한 限定治産者) ① 舊法에 依하여 心身耗弱者 또는 浪費者로 準禁治産宣告를 받은 者는 本法施行日로부터 本法의 規定에 依한 限定治産者로 본다.

② 舊法에 依하여 聾者, 啞者 또는 盲者로 準禁治産宣告를 받은 者는 本法施行日로부터 能力을 回復한다

第 5 條 (夫의 取消權에 關한 經過規定) 舊法에 依하여 妻가 夫의 許可를 要한 事項에 關하여 許可없이 그 行爲를 한 境遇에도 本法施行日後에는 이를 取消하지 못한다

第 6 條 (法人의 登記期間) 法人의 登記事項에 關한 登記期間은 本法施行日前에 事項에 對하여도 本法의 規定에 依한다

第 7 條 (罰則에 關한 不遑及) ① 舊法에 依하여 過料에 處할 行爲로 本法施行當時 裁判을 받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本法에 依하여 過怠料에 處할 境遇에 限하여 이를 裁判한다

② 前項의 過怠料는 舊法의 過料額을 超過하지 못한다

第 8 條 (時效에 關한 經過規定) ① 本法施行當時에 舊法의 規定에 依한 時效期間을 經過한 權利는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取得 또는 消滅한 것으로 본다

② 本法施行當時에 舊法에 依한 消滅時效의 期間을 經過하지 아니한 權利에는 本法의 時效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

○ 사문서의일자작성규칙(1970. 5. 26. 제 7 회 법률위원회 제 132 호)

개정 1976. 4. 21. 부칙 제 606호
1990. 2. 26. 제 1109호
1993. 11. 19. 제 1272호
1995. 11. 20. 부칙 제 1400호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 3 호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에 일지
리점을 명필서기권, 발원사부락, 발원구상 또는 발원중사부락에 첨가하는 수주
요구 사항에 관하여 정한다.

제 2 조 (수주요) ① 발원구상첨가요구사항은 600인 이하로 한다. 다만, 사문서의 장
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주요수 4매마다 100인을 초과한다.

② 제 1 항의 수주요는 전항으로 나누어역이 아니며, 발원공무원의 명에 사문서의
이력 또는 이력에 조성 수주요의 명수범위를 첨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(器記)에
의하여 그 명수권의 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76. 4. 21 제 606호)

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0. 2. 26 제 1109호)

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3. 11. 19 제 1272호)

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5. 11. 20 제 1400호)

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